

영등포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4. 1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357호로 2018년 4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수수료)개정(2017.12.21)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함.(안 별표 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개정(2017.12.21)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3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 파일란에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여 개정하였음.
- 검토결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 표] <개정 2017. 12. 21.>

수 수 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p>○ 사진필름의 열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 · 슬라이드 등	<p>○ 마이크로필름의 열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p>○ 슬라이드의 시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200원 	<p>○ 사본(종이출력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p>○ 마이크로필름의 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p>○ 슬라이드의 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p>○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p>○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p>○ 사본(종이출력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p>○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p>○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 도면 · 사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

		<p>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p> <p>○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	--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영등포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4. 1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358호로 2018년 4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주택분)의 일시부과 가능 세액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 가능하도록, 일시부과 가능 세액범위를 확대.(안 제9조)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9조(납기)에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가능하도록, 일시부과 가능 세액 범위를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 개정하였음.
- 검토결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고지서를 한 해 두 번(7·9월) 부과함에 따른 이중 과세 오해와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세법

[시행 2018.4.1.] [법률 제15335호, 2017.12.30., 일부개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영등포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4. 1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359호로 2018년 4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동이체 세액 공제 범위 확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 명확화(안 제9조의2)

나.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동이체 세액공제 범위확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상 설립인가(제85조)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조직변경인가(제105조의2)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용어 정의를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11조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도 세액을 공제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검토결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3.2.>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 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